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96
----------	-----

2024. 6. 24.(월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6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6월 12일

-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민영완)

가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자율신설 기준 폐지 및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분장사무 변경(안 제10조제2호)
 - (문화체육관광국) 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
→ 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
-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삭제(안 제65조)
- 자율신설기구 존속기한 삭제: 과학인재국, 바이오식품의약국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변경에 따른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고,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법령개정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분장 중 “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”을 “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”으로 변경하고,
 - 자율신설기구(과학인재국, 바이오식품의약국)의 성과평가와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임.

- 「문화재보호법」이 2024년 3월 21일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되고, 그 시행일이 2024년 5월 17일로 지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문화체육관광국 분장업무인 “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”을 법 개정에 따라 “문화유산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,

- 2024년 3월 29일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에서 “제9조의2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에 관한 특례)”가 삭제됨에 따라, 해당 조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과학인재국과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,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호 중 “문화재지정”을 “국가유산 지정”으로 한다.

제7장(제65조)을 삭제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4847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문화체육관광국)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~ 14. (생략)</p> <p>제7장 <u>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</u></p> <p>제65조(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) ①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성과지표 달성 여부, 행정수요 지속 여부, 기능수행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p> <p>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</p>	<p>제10조(문화체육관광국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국가유산 지정</u> ----- -----</p> <p>3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</p>

제3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

과학인재국의 존속기한은 2024
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4847호 충청북도
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
부칙

제3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

바이오식품의약국의 존속기한
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
다.

<삭 제>

충청북도조례 제4847호 충청북도
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
부칙

<삭 제>

관련 법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125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<삭제> 제9조의2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) ① 시·도는 별표 1에 따른 시·도의 실·국·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실·국·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·국·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⑤ (생략)

【국가유산기본법】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가유산”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·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·자연유산·무형유산을 말한다.
2. ~ 4. (생략)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
따른 자율신설 기준 폐지 및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변경
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
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 행정국 행정운영과장 김은영